예 산 총 칙

2016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354,276,513	10,628,295
일반회계	317,507,751	9,525,233
특별회계	36,768,762	1,103,063
공기업특별회계	29,941,721	898,252
상수도공기업	13,786,905	413,607
하수도공기업	16,154,816	484,644
기타특별회계	6,827,041	204,811
의료급여기금운영	1,112,943	33,388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298,706	8,961
수질개선	459,921	13,798
농공지구조성사업	1,912,202	57,366
공영개발사업	417,964	12,53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11,926	3,358
주택사업	2,182,250	65,468
기반시설	17,846	535
장기미집행	313,283	9,39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별첨 ¨ 채무부담행위조서 ¨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106,7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포함) 지방채 차입 한도액은 10,628,000 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